

교원 연봉계약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한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모든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 단,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, 보수, 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3조(계약기간 및 재계약) ①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하다.

제4조(비밀유지)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보수) ① 연봉계약제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연봉액은 연구 및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제시한 보수에 계약대상교원이 합의한 경우 정하며, 재계약에 있어서의 연봉산정은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평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.

② 연봉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원의 초과강사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.

③ 보수는 연봉액을 매월 균등분할 지급한다.

제6조(면직)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.

제7조(관련규정의 적용)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8조(관련규정의 고지) 임용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규임용 교원이 연봉계약제와 관련된 학내 규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